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등의 결격사유 정비〉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650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등의 결격사유 정비	2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65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18.

(3) 회 부 일 : 2024. 1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개인 또는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임원 또한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등의 결격사유 정비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제1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로 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u> 1. <u>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 ----- --. <u><삭 제></u>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제19조에서 규정하면서, 이 중 일부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은 제1조(목적)¹⁾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 향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반드시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1)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결격사유 비교 >

사회복지법인 임원(제19조)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제34조)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을 중점으로 규정한 반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 등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체라는 점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를 의사결정 구조의 불합리성을 야기할 만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예컨대, 제19조제2호는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²⁾을 전제로 하는 결격사유인데, 해당자가 사회복지법인에 부적합하다는 해임명령이 곧바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다만, 제19조제1의9는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같은 조 제1의7 및 제1의8과 유사한 취지로 보임.

2)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도 관련분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상의 혜택과 제약을 동시에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과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령에서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³⁾

이는 사회복지사업 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효율성 및 적합성을 따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복지사업 외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모든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것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위탁 가능성을 축소하여, 비영리법인을 통한 효율적인 위탁 운영이라는 기존의 취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위탁 운영 시설의 수 >

(23년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시설 수	국가·지자체 설치 운영 시설(a+b)	직영 시설 (a)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 시설(b)
노인	23,035	970	88	882
아동	6,484	1,477	71	1,406
장애인	4,007	724	14	710
정신	418	-	-	-
노숙인	139	39	-	39
결핵/한센	6	1	-	1
지역자활센터	250	250	7	243
사회복지관	473	374	28	346
어린이집	28,954	6,187	83	6,104
총계	63,766	10,022	291	9,731

자료: 보건복지부

다만,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덕성 결여와 관련된 결격사유는 비영리법인 임원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인과 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법인과 시설의 차이를 고려할 때,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시설이 서비스의 직접 제공기관인만큼, 도덕성과 직결되는 제19조 제1항 제1호의9, 동조 제3호의 결격사유를 시설 설치·운영 주체에 확대 적용하는 것에 동의. 다만,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에는 사회복지사업 외의 목적사업도 수행할 수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도 포함되어 있어, 모든 시설 운영법인에 사회복지법인에 특화된 규정인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임원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일반 비영리법인 간 비형평성의 해소,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결격사유 강화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대외 신뢰도 향상
-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사회복지사업 운영의 도덕성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경과규정 등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기존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법령 적용의 혼선에 의한 제공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문 의 처

02)6788-5497